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여의도동, 금산빌딩) /전화 02-761-4203/팩스 02-782-6659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부서장: 송자은 부장 담당자: 고정은 과장 e-mail: jenko@kcia.or.kr

대한장협: 제5-159호

시행일자: 2020.5.29.

수신자: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대표이사

참 조

제 목: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 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31~)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 화장 비누 업자가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를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19.3.14. 시행) 등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1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0년 6월 12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1부.

2. 검토의견서 양식.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